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523
----------	-----

제안연월일 : 2024. 2. 27.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3. 12. 14.)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인상액을 반영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각각 1,500,000원과 500,000원으로 인상
- 의원 구급 시 월정수당 지급 제한 및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조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가. 법제심사(경상북도의회사무처 예산입법담당관) : 검토완료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예산입법담당관-233(2024. 2. 26.)

나. 부패영향평가(경상북도 감사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경상북도 정책기획관-2513(2024. 2. 27.)

다. 규제심사(경상북도 법무혁신담당관) : 규제사무 없음

§경상북도 정책기획관-2513(2024. 2. 27.)

라. 해당부서 의견(경상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 붙임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등)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경상북도의

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과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6조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500,000원과 보조활동비 5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② (생 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 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 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경 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 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p> <p><신 설></p>	<p>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3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등)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 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p> <p>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 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 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감</p>

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의 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

<p>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 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u>1,200,000원</u>과 보조활동비 <u>300,000원</u>으로 한다.</p>	<p><u>의 경고 징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u></p> <p>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 ----- <u>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500,000원과 보조활동비 500,000원</u>-----.</p>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비용추계서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2. 비용추계의 전제 : 500,000원 × 60명 × 12월 = 360,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의정활동비 증액분	360백만원	360백만원	360백만원	360백만원	360백만원	1,800백만원
<input type="checkbox"/> 총 비용		360백만원	360백만원	360백만원	360백만원	360백만원	1,800백만원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비							
도비	일반회계	360백만원	360백만원	360백만원	360백만원	360백만원	1,800백만원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민간							
기타							
합계		360백만원	360백만원	360백만원	360백만원	360백만원	1,800백만원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원(054-880-512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각각 1,500,000원과 500,000원으로 증액(총 500,000원)함에 따라 경북도의회 의원 60명에 대한 증액분 반영

예산담당관실 검토의견

조례(규칙)명	검토의견
<p>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인상액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해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됨. ◦ 도의회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 50만원(의정 자료수집·연구비 3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을 증액하여 소요비용을 5년간 매년 360백만원으로 추계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수반 사항 발생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비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검토 및 예산부서와의 재정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